

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
번호

154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현 보건소 시설에는 입원실이 없는 바 일부조항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.

2 주 요 글 자

- 입원 제한서 및 보증금조항 삭제 (안 제3조 참조)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천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	수출입통관세
--------	--------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

수출입통관세

신,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<u>제8조(입원서약서및 보증금)</u> <u>①보건소에 입원하는 자는 재산및</u> <u>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</u> <u>서약서(별지서식)를 보건소장에게</u> <u>제출하게 할수있다.</u> <u>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</u> <u>때에는 입원료의 6 -10일에 상당</u> <u>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수</u> <u>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</u> <u>에게 정산한다.</u>	제8조 (삭 제)